2021년 응급의료기관평가 전원핫라인 불시점검 안내

[2021.3.15.(월) 응급의료평가·질향상팀]

│. 추진 배경

□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5조
- 2019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19.11.22.)
- 응급의료평가 · 질향상팀-1383(2019.12.26.)호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441(2021.01.26.)호

□ 목적

○ 환자의 전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 정보와 양질의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하며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을 위한의료기관 연락망인 전원 핫라인 점검을 통해 응급의료 비상연락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Ⅱ. 평가 개요

□ 대상기관

○ 문서 시행일 기준 지정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 평가일정

○ 2021년 3월 23일(화) ~ 2021년 4월 22일(목) 중 무선핫라인 불시점검 2회 시행※ 불시점검 종료 후 지정된 기관 : 2021. 7. 13.(화) ~ 7. 29.(목) 중 1, 2차 진행

□ 평가항목

○ 평가항목: 공공성 1-2) 자원정보 신뢰도 중 (무선)전원핫라인 점검 실적

Ⅲ. 평가 시행

□ 평가기준

- 공공성 1-2) 자원정보 신뢰도 중 무선 전원핫라인 점검 실적 세부기준
 - 응급상황관리책임자(gatekeeper)*가 무선핫라인을 휴대하여 응급환자 수용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응급상황관리책임자는 응급실 전담전문의로서 근무 중 해당 의료기관의 수술실, 중환자실 등의 상황과 주요 검사장비의 가용여부 등을 파악하여 응급환자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이 있음(근거: 안전한 병원간 전원을 위한 응급환자 이송지침 제5조)
 - 단, 전원전담코디네이터*가 수신시 인정하나 통합인트라넷 내 사업 참여의 전원핫라인 담당 필수 인력으로 '전원전담코디네이터'를 입력해야 하며, 변경 시에 실시간으로 등록정보를 갱신하여야 함
 - * 전원전담코디네이터는 전원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인력이어야 하며 전원 업무 외 응급실 업무 및 타과, 타기관 업무를 겸하면 인정하지 않음(현지 평가 시 확인). 또한 전원전담코디네이터는 응급실 전담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입력방법)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관리 → 기관정보관리 → 참여사업→ 연락처 정보 중 전원핫라인 선택 후 입력

□ 평가 후 조치

- 평가 수행 중 미비점·문제점 발견 시 응급의료기관에 연락하여 개선 조치
- 점검기간 내 전원핫라인(무선) 불시점검 2회 실시하여, 2회 모두 미 수신일 경우 응급진료전문의진찰료 가산기관에서 제외 됨

[붙임 1.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 세부조건 공지(2019.11.2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변경 공지

<2019.11.22. 응급의료평가·질향상팀>

□ 가산 세부조건

- (전제조건)
- ①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평가종합등급 **B등급 이상**이면서,
- ②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 ③ '안전성영역-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진료율'이 80.0%이상인 기관에 한하며, 아래의 '가산조건'을 충족하고, '제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응급진료전문의 진찰료 수가 가산적용 됨

○ (가산조건)

- ① '효과성-전담의료 인력의 적절성-전담전문의' 평가 결과가 2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차등 적용 (1등급은 50% 가산, 2등급은 40%가산) 하되,
- ② 단, 아래의 '제외조건'에 해당되면 가산기관에서 제외 됨
- * 효과성 현황조사(평가 미반영) 결과 반영

○ (제외조건)

- '공공성영역-자원정보신뢰도-전원 핫라인'* 평가결과, 불시 점검 4회 중 2 회 이상 전문의 미수신일 경우
- * 단, '20년에 한하여 1월~6월 사이에 **불시점검을 2회 실시**하여, **2회 모두 미 수신**일 경우 **가산기관**에서 **제외** 됨

○ (수가적용 시기)

- '21년부터 전년도 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시행

○ (기타)

- '22년 수가가산 시 '제외조건'이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Ⅲ. 202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활용

1. 응급의료수가

○ 응급의료수가 지표 변경

응급의료 수가	수가 산정 연동 지표		
등납의표 구기	기존	변경	
	안전성 3-1) 적정시간 내 전문의	안전성 3-1) 적정시간 내 전문의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응2)	직접 진료율	직접 진료율(현지의무기록평가제외)	
·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괸찰료(응3,4)	안전성 3-2) 환자 분류의	미적용*	
	신뢰수준	비역중	
	적시성 1-2) 중증상병해당환자의	미적용*	
으그저요 <u>조하다</u> 시 고디근(으다)	재실시간	미역 중	
·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응5) · 응급의료행위 가산	기능성 1-3) 최종치료 제공률	좌동	
	기능성 1-4) 전입 중증응급환자	지 도	
	진료 제공률	<u>좌동</u>	

- * 변경기준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논의 필요
- **간호등급제:** 평가대상 기간(5개월)으로 산출 후 1년(365일)으로 환산 적용 (효과성 1-3) 전담간호사)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 수가 기준 변경

<가산 수가 기준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①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평가종합등급 B등급 이상이면서,	
 전제조건	②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신정이 기능한 기관으로,	좌동
전세요진 	③ '안전성영역-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진료율'이 80.0%이상인 기관에	<u> </u>
	한하며, '가산조건'을 충족하고,'제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효과성영역-전담의료 인력의 적절성-전담전문의'평가 결과가 2	
	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차등 적용 (1등급은 50% 가산, 2등급은 40%	좌동
가산조건	가산) 하되,	※ 효괴성 현황조사
		(평가 미반영) 결과 반영
	② 단, 아래의 '제외조건'에 해당되면 가산기관에서 제외	
제외조건	'공공성영역-자원정보신뢰도-전원 핫라인'* 평가결과, 불시 점검 4회 중	- 불시점검 2회 중 2
		회 모두 미수신일
	2회 이상 전문의 미수신일 경우	경우

[붙임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11.2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1월 22일(금) 건정심 종료 후		
ull Tr Ol			
배 포 일	20	19. 11. 22. / (²	용 14배 <i>)</i>
보험급여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과 장	이 중 규	044-202-2730
수가 개선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담 당 자	심 은 혜	044-202-2732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방안)	담 당 자	이 동 우	044-202-2733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 개선)	담 당 자	주 철	044-202-2731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및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 2019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1.22) -
 - 응급실 대기시간 감소와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등을 위해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추진 ('20.하반기부터 단계적 적용)
 -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개편**(*18.12월) 후속조치로, 현행 **8개** 전문 과목에 한정된 의사인력 가산을 **26개 모든 전문 과목**으로 확대 (*20.7월~)
 - 장애인 보청기 개별 가격 고시 및 적합관리(Fitting) 비용 분할 지급으로, 적정 품질 보장 및 사후관리가 되도록 제도 개선 ('20.7월~)
 - 7개 질병군 포괄수가를 6.5% 인상하고, 의료의 질과 환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유착방지제 등 9건 별도보상 신설 ('20.1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2일(금) 2019년 제22차 건강보험정 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응급실 적 정수가 보상 방안,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7개 질 병군 포괄수가 개편,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 개선 등을 보고 받 았다고 밝혔다.
-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방안 〉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 발표)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19.5월) 등에 따라 응급실 관련 수가가 일부 개선된다.
 - 응급의료기관평가 도입 등에 따라 **응급실 과밀화는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환자들이 진료를 받거나 또는 진료 후 입원결정까지 **장시** 간 혼잡한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것은 환자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응급실만 전담하는 전문의를 추가로 확충, 경증환자는 신속히 퇴원 또는 전원조치하고, 중증환자는 지체 없 이 입원 결정하여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의료기관에서 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인력 확보에 소극적이었다.
- □ 이번 건강보험 수가개선에 따라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응급실 전 담전문의를 확충하여 환자의 전원수용, 입·퇴원 및 치료방침 등에 대 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는 의료기관은 추가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2등급 이상 기관*으로서,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기관은 현행 전문의 진찰료에서 40~50%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 * 현행 응급의료기관평가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2등급은 연간 5,000명, 1등급은 4,000명 이내
- 다만, 해당 인력 확보를 통해 **적정 진료기관으로 환자를 신속히 전원하거나 전원 의뢰 오는 환자를 적극 수용하는 활동**을 하도록,
 - 현재 각 응급의료센터 의료진간 운영 중인 **응급연락망**(일명 전원 항라인(Hotline)) **불시 점검에서 탈락**하거나,
 - 중증환자 수용이 가능하다고 응급 의료시스템 상 확인되어 환자를 전원하였으나 환자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은 상기 기준을 충족하여도 가산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개선(안) >

항목		현 행		개 선		본인부담금
		상대가치점수	금액(원)	상대가치점수	금액(원)	차액(원)
	권역센터	E44 F0	20,200	1등급 767.37	57,480	▲4,790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소아전문)	511.58	38,320	2등급 716.21	53,640	▲3,830
	지역센터	464.66	24 900	1등급 696.99	52,200	▲ 4,350
	시작센터	464.66	34,800	2등급 650.52	48,720	▲3,480

^{*} 본인부담금은 응급실 평균본인부담률 약 25%적용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문의진찰료 산정대상 미해당)

□ 아울러, 응급실 전담 안전인력을 24시간 배치하고, 환자별 진료 대 기 현황 및 환자 진료 상황(진행 중인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안 내·상담하는 인력을 지정·운영하는 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를 차등 적용한다.

○ 이번 개선을 통해 응급실 내원 시 환자들이 어떤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고, 언제쯤 검사 결과가 나와 담당 의료진의 진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응급실 진료가 이뤄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응급의료관리료 수가개선(안) >

항목		현 행		개 선		본인부담금
		상대가치점수	금액(원)	상대가치점수	금액(원)	차액(원)
	중앙·권역센터	812.28	60,840	871.43	65,270	▲ 1,110
응급의료 관리료	지역센터	703.98	52,730	763.13	57,160	▲ 1,110
	지역기관	270.76	20,280	308.01	23,070	▲ 700

^{*} 본인부담금은 응급실 평균본인부담률 약 25%적용

□ 이번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응급의료 관리료 수가 개선은 **응급** 의료기관평가 지표 신설 및 평가를 거쳐 빠르면 2020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붙임 4. 공공성 1-2] 자원정보 신뢰도 평가 기준집]

지표	종류	적용대상종별	측정/환류시기	측정방법
정규	변경	전 종별	연 1회 측정 및 환류	유선 및 현지평가

[정 의]

○ 응급의료기관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병상정보 및 병원자원 정 보에 대한 신뢰도

[취지 및 목적]

○ 환자의 전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정보를 이용한 빠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 자에게도 실시간으로 양질의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응급의료기관의 관리방안]

- 응급의료기관에서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https://portal.nemc.or.kr)**으로 병상정 보를 포함한 응급의료기관의 자원정보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송하여야 함
- 자원정보는 규칙적인 전송주기를 갖추고 전송하여야 함
- 개정된 실시간 가용병상정보 전송기준에 따라 정보를 전송하여야 함
- 응급의료종별 필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관에서 구분 가능한 정보 항목은 전수 전송하여야 함
- 전입 의뢰를 위한 핫라인의 설치와 운용
 - 응급의료기관은 전원전용 수신 전화(이하 "전원핫라인")를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반드시 유·무선핫라인을 갖 추고 전문의가 수신하도록 하여야 함
 - 전원핫라인은 전원의뢰 또는 구급환자 수용의뢰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https://portal.nemc.or.kr)에 등록되어야 함

[산출방법]

- 현지평가(불시점검 1회), 체크리스트
- 산출식: 자원정보 체크리스트 점수(90점) + 평가대상 기간 중 전원핫라인* 점검실적(10점)
 - * 전원핫라인 : (센터급 이상) 평가대상기간 중 $\mathbf{A} \cdot \mathbf{P}\mathbf{d}$ 각 $\mathbf{4}$ 회 불시점검 실시
 -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대상기간 중 유선 또는 무선 4회 불시점검 실시

[전원핫라인 점검 실적 체크리스트]

○ 센터급 이상

	확인/	니하	배점(10점)
	4 인/	ง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유선	전원핫라인 번호가 일치하는가?	□ 2P: 4회 일치□ 1P: 3회 일치□ 0P: 2회 이하 일치 또는 모두 불일치
전원핫라인 점검 실적	무선	전원핫라인 번호가 일치하는가?	□ 2P: 4회 일치□ 1P: 3회 일치□ 0P: 2회 이하 일치 또는 모두 불일치
		응급상황관리책임자가 수신했는가?	 □ 6P: 4회 수신 □ 4P: 3회 수신 □ 2P: 2회 수신 □ 0P: 1회 수신 또는 모두 미수신

○ 지역응급의료기관

하나나하		배점(10점)
	확인사항	지역응급의료기관
	유선 또는 무선 전원핫라인 번호가	□ 5P: 4회 일치
	#선 또는 무선 선원닷타인 변호가 일치하는가?	□ 2P: 3회 일치
전원핫라인 점검 실적		□ OP: 2회 이하 일치 또는 모두 불일치
	전원핫라인 용도를 인지하고 있는가?	□ 5P: 4회 인지
		□ 2P: 3회 인지
		□ OP: 2회 이하 인지 또는 모두 미인지

[전원핫라인 점검실적 세부기준]

○ 센터급 이상

체크리스트	세부기준
전원핫라인 번호가 일치하는가?	 전원 핫라인은 '전원'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함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등록정보와 핫라인 정보가 일치하고, 응급실 대표번호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 센터급 이상은 반드시 유선·무선 핫라인 2가지 모두 구축하여야 함 평가대상기간 내 유・무선 각 4회 불시 점검 실시하여 전원핫라인 번호 일치여부 확인
응급상황관리책임 자가 수신했는가?	 응급상황관리책임자(gatekeeper)*가 무선핫라인을 휴대하여 응급환자 수용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응급상황관리책임자는 응급실 전담전문의로서 근무 중 해당 의료기관의 수술실, 중환자실 등의 상황과 주요 검사장비의 가용여부 등을 파악하여 응급환자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이 있음 * 단, 전원전담코디네이터가 수신시 인정하나 통합인트라넷 내 '전원전담코디네이터' 인력을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전원전담코디네이터는 응급실 전담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변경 시에 실시간으로 등록 정보를 갱신하여야 함 (입력방법)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관리 →기관정보관리→참여사업→연락처 정보 중 전원핫라인 선택 후 입력 * 평가대상기간 내 무선 4회 불시 점검 실시하여 응급상황관리책임자의 무선핫라인 수신여부를 확인

○ 지역응급의료기관

체크리스트	세부기준
전원핫라인 번호가 일치하는가?	· 전원 핫라인은 '전원'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함 ·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등록정보와 핫라인 정보가 일치하고,
전원핫라인 용도를 인지하고 있는가?	응급실 대표번호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 · 평가대상기간 내 유선 또는 무선 4회 불시 점검 실시하여 전원핫 라인 번호 일치여부 확인

[붙임 5. 2021년 응급의료기관 (무선)전원핫라인 불시점검 대상기관]

'21.3.15.일 기준

연번	구 분	병 원 명	시 도
1	권역응급의료센터	(학)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서울
2	권역응급의료센터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서울
3	권역응급의료센터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4	권역응급의료센터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서울
5	권역응급의료센터	한양대학교병원	서울
6	권역응급의료센터	동아대학교병원	부산
7	권역응급의료센터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8	권역응급의료센터	영남대학교병원	대구
9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인천
10	권역응급의료센터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
11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남대학교병원	광주
12	권역응급의료센터	조선대학교병원	광주
13	권역응급의료센터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14	권역응급의료센터	학교법인건양교육재단건양대학교병원	대전
15	권역응급의료센터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울산
16	권역응급의료센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
17	권역응급의료센터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경기
18	권역응급의료센터	아주대학교병원	경기
19	권역응급의료센터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경기
20	권역응급의료센터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경기
21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경기
22	권역응급의료센터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경기
23	권역응급의료센터	강릉아산병원	강원
24	권역응급의료센터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
25	권역응급의료센터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강원
26	권역응급의료센터	충북대학교병원	충북
27	권역응급의료센터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
28	권역응급의료센터	원광대학교병원	전북
29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30	권역응급의료센터	목포한국병원	전남
31	권역응급의료센터	성가롤로병원	전남
32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안동병원	경북
33	권역응급의료센터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경북
34	권역응급의료센터	포항성모병원	경북
35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상대학교병원	경남
36	권역응급의료센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남
37	권역응급의료센터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경남
38	권역응급의료센터	제주한라병원	제주

연번	구 분	병 원 명	시 도
39	지역응급의료센터	강북삼성병원	서울
40	지역응급의료센터	건국대학교병원	서울
41	지역응급의료센터	경희대학교병원	서울
42	지역응급의료센터	삼성서울병원	서울
43	지역응급의료센터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
44	지역응급의료센터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서울
45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앙대학교병원	서울
46	지역응급의료센터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서울
47	지역응급의료센터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서울
48	지역응급의료센터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서울
49	지역응급의료센터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서울
50	지역응급의료센터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서울
51	지역응급의료센터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서울
52	지역응급의료센터	삼육서울병원	서울
53	지역응급의료센터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
54	지역응급의료센터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서울
55	지역응급의료센터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서울
56	지역응급의료센터	성애의료재단성애병원	서울
57	지역응급의료센터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서울
58	지역응급의료센터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서울
59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서울
60	지역응급의료센터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서울병원	서울
61	지역응급의료센터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서울
62	지역응급의료센터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서울
63	지역응급의료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중앙보훈병원	서울
64	지역응급의료센터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서울
65	지역응급의료센터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66	지역응급의료센터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부산
67	지역응급의료센터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
68	지역응급의료센터	대동병원	부산
69	지역응급의료센터	비에이치에스한서병원	부산
70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 온그룹의료재단 온종합병원	부산
71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은성의료재단좋은삼선병원	부산
72	지역응급의료센터	인제대 학교해 운대백병원	부산
73	지역응급의료센터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
74	지역응급의료센터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
75	지역응급의료센터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
76	지역응급의료센터	대구파티마병원	대구
77	지역응급의료센터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인천
78	지역응급의료센터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	인천

연번	구 분	병 원 명	시 도
79	지역응급의료센터	검단탑병원	인천
80	지역응급의료센터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인천
81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 나사렛의료재단 나사렛국제병원	인천
82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 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인천
83	지역응급의료센터	인천사랑병원	인천
84	지역응급의료센터	한림병원	인천
85	지역응급의료센터	KS병원	광주
86	지역응급의료센터	광주기독병원	광주
87	지역응급의료센터	서광병원	광주
88	지역응급의료센터	첨단종합병원	광주
89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영훈의료재단대전선병원	대전
90	지역응급의료센터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대전
91	지역응급의료센터	학교법인을지학원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전
92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동강의료재단동강병원	울산
93	지역응급의료센터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세종
94	지역응급의료센터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경기
95	지역응급의료센터	(의)영문의료재단 다보스병원	경기
96	지역응급의료센터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경기
97	지역응급의료센터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경기
98	지역응급의료센터	강남병원	경기
99	지역응급의료센터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경기
100	지역응급의료센터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경기
101	지역응급의료센터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경기
102	지역응급의료센터	광명성애병원	경기
103	지역응급의료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경기
104	지역응급의료센터	남양주한양병원	경기
105	지역응급의료센터	대진의료재단분당제생병원	경기
106	지역응급의료센터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경기
107	지역응급의료센터	부천세종병원	경기
108	지역응급의료센터	연세대학교의과대학용인세브란스병원	경기
109	지역응급의료센터	오산한국병원	경기
110	지역응급의료센터	원광대학교산본병원	경기
111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남촌의료재단시화병원	경기
112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녹산의료재단동수원병원	경기
113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백송의료재단굿모닝병원	경기
114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양진의료재단평택성모병원	경기
115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우리의료재단김포우리병원	경기
116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인봉의료재단뉴고려병원	경기
117	지역응급의료센터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경기
118	지역응급의료센터	참조은병원	경기

연번	구 분	병 원 명	시 도
119	지역응급의료센터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경기
120	지역응급의료센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경기
121	지역응급의료센터	현대병원	경기
122	지역응급의료센터	효산의료재단안양샘병원	경기
123	지역응급의료센터	효산의료재단지샘병원	경기
124	지역응급의료센터	강원대학교병원	강원
125	지역응급의료센터	강원도삼척의료원	강원
126	지역응급의료센터	강원도속초의료원	강원
127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강릉동인병원	강원
128	지역응급의료센터	건국대학교충주병원	충북
129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인화재단한국병원	충북
130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자산의료재단제천서울병원	충북
131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정산의료재단효성병원	충북
132	지역응급의료센터	청주성모병원	충북
133	지역응급의료센터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충남
134	지역응급의료센터	당진종합병원	충남
135	지역응급의료센터	아산충무병원	충남
136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백제병원	충남
137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영서의료재단천안충무병원	충남
138	지역응급의료센터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충남
139	지역응급의료센터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충남
140	지역응급의료센터	대자인병원	전북
141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대산의료재단익산병원	전북
142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영경의료재단전주병원	전북
143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오성의료재단동군산병원	전북
144	지역응급의료센터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정읍아산병원	전북
145	지역응급의료센터	재단법인예수병원유지재단예수병원	전북
146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전북
147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전북
148	지역응급의료센터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
149	지역응급의료센터	여천전남병원	전남
150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목포구암의료재단 목포중앙병원	전남
151	지역응급의료센터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경주병원	경북
152	지역응급의료센터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경북
153	지역응급의료센터	안동성소병원	경북
154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덕산의료재단김천제일병원	경북
155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동춘의료재단문경제일병원	경북
156	지역응급의료센터	포항세명기독병원	경북
157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갑을의료재단갑을장유병원	경남
158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보원의료재단경희의료원교육협력중앙병원	경남

연 번	구 분	병 원 명	시 도
159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한마음국제의료재단한마음창원병원	경남
160	지역응급의료센터	재단법인대구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창원파티마병원	경남
161	지역응급의료센터	제일병원	경남
162	지역응급의료센터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경남
163	지역응급의료센터	한일병원	경남
164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	제주
165	지역응급의료센터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166	지역응급의료센터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제주
167	지역응급의료센터	한마음병원	제주